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36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7. 22.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세액'란 기재 각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투자신탁 설정 계약,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등의 감면

1) 원고[1]는 2010. 12. 17. 주식회사 B[2](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가 원고에게 신탁한 집합투자재산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도록 하되, 그 재산 중 100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며, 수익자는 50인 미만으로 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 제9조 제19항, 제188조, 제229조 제2호가 정한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명칭 : 'C', 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를 설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수익자들에게 판매되었고,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는 그 판매대금을 수령해 두었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일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하였다.

3) 원고는 2010. 12. 17. 위 납입받은 신탁원본 등으로 서울 중구 D, E 지상 건물의 15, 16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위 두 규정을 통틀어 '이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탁업자이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투자업자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가 정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만 납부받았다.

나. 이 사건 투자신탁의 등록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는 2010. 12. 21.경 금융감독원장에게[3] 이 사건 투자신탁에 관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1. 1. 10. 위 등록이 수리되었다.

다. 이 사건 처분

1)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는 2013. 10. 25. '이 사건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F)을 하였다.

2) 피고는 '부동산 취득 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앞서 감면했던 취득·등록세 등 합계 89,794,96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서울특별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2014. 11. 5.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7조 제3항 및 별표 20 제59호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접수, 등록신청서 내용 검토, 등록여부 결정 등에 관한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감면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감면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감면규정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까지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에서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등록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등록세 등을 감면하여 왔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도 있었기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취득·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비과세관행 형성 후의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함으로써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감면규정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문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의미는 결국 그 문언과 입법취지, 규율 대상과 내용 및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 사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감경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문언 해석의 한계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건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를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구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본문),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정의하면서 그 중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규정하며(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에 의하면 100분의 50이다)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구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20항)이라고 각 정의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한 많은 법률에서 '…법에 정하는 ~'과 같은 형식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차용하는 경우에 쓰인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이라는 문언도 구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재산'의 개념을 차용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문언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구 자본시장법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 '부동산집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마친 다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자신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직접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을 신탁업자에게 납입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는 별도의 감면요건을 곧바로 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위와 같은 감면요건이 내재되어 있다고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감면규정과 구 자본시장법 등의 제 · 개정 경과

2007. 8. 3. 제정된 자본시장법이 2009. 2. 4. 시행되면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2009. 2. 4. 폐지되었는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 제2항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사모간접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탁약관을 보고하면 되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 되지만(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6항, 제1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달리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구 자본시장법 제182조).

한편,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제 · 개정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시행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어 2008. 12. 2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록세와 취득세 감경대상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었다가, 자본시장법 시행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어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록세 감경대상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일정 시한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경대상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일정 시한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되었는바, 양자 사이에는 법률명과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만 있을 뿐이고 문언상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러한 자본시장법 제정 및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폐지 경과, 이 사건 감면규정 등의 연혁을 종합하여 보면,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 등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가 사후 보고에서 등록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신탁 등 형태의 사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규정의 문언에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입법자가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인한 규제 방식의 변화를 감안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친 다음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고 그 판매대금의 운용으로 형성된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경대상으로 상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01. 8. 14. 신설	○ 제119조 제6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 제120조 제4항 : 제119조 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2003. 12. 30. 개정	○ 제119조 제6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후 2004. 12. 31. '… 간접투자재산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2006. 12. 30. '…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소폭 개정되었다) ○ 제120조 제4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1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후 2004. 12. 31.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2006. 12. 30.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소폭 개정되었다)
2008. 12. 26. 개정	○ 제119조 제6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제120조 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010. 1. 1. 개정 (세율과 취득시한 부분만 개정됨)	○ 제119조 제6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제120조 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다)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

부동산투자신탁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01. 8. 14. 법률 제6501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되었는데, 그 취지는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신탁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사건 투자신탁과 같이 대규모의 집합투자재산을 조성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후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등록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위축됨으로써 부동산시장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는 이 사건 투자신탁에 관한 등록을 마쳤는바,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 시점과 비교하여 이러한 등록의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 판매행위의 금지와 조세감면 필요성의 관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1)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구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 본문), 투자신탁에 있어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그 자신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위 판매를 할 수 있으나(구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 단서), 어느 경우에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되기 전까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구 자본시장법 제76조 제3항 본문),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3호).

구 자본시장법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둔 목적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이러한 규제 목적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달성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었다고 하여 신탁업자를 통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조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까지 고려하였던 것은 아니다(오히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조세 감면을 부인하면, 최종적으로 그로 인한 조세 부담이 투자자들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투자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2) 행정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서 그러한 위반사실을 감면배제 내지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조세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면 혜택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본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같은 조항 단서는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관계 법령 위반을 지방세 면제의 소극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규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은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 이외에 등록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등록 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감독당국은 이른바 공펀드를 규제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신탁원본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록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감독당국은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 판매행위를 규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2014. 4. 24.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립규제를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고, 모든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설정·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5. 7.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3호에 규정된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판매행위 처벌 규정은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 판매행위 금지 규정 및 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데,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구 자본시장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등록 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쪽으로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

마) 비록 원고에 대한 것은 아니나 아래와 같은 금융감독당국과 서울특별시장의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정이 되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에 관하여 이러한 관계 기관의 견해 표명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는 것은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관계 당사자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1)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소속 직원은 2011. 11. 15. 어

4)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느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민원신청란에 기재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납입받아 신탁을 설정하고 동 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비록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위 부동산 매수 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신탁 재산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의한 등록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2)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 신탁원본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록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상품팀은 2009. 2.경 금융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공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하는 취지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지방세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과세권을 갖는 서울특별시장도 2011. 12. 5. 서대문구청장의 2011. 9. 28.자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되어 적법한 등록신청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이후에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정할 사항이다'라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바) 과세의 형평성

피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 판매행위가 있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록된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되기 전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었지만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와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부동산 취득 후에 마쳐진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 범위를 확정하면서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시기를 고려하다보니 양자의 조세 부담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가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시기에 좌우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부인하고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목록

순번	처분일자	세목	세액(단위: 원)
1	2014. 11. 10.	취득세	24,333,100
2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0,168,790
3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866,610
4		등록세	24,333,100
5		등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0,395,090
6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866,610
7		지방교육세	4,866,620
8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079,010
9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86,660
10		농어촌특별세	2,443,310
11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016,870
12	2015. 3. 9.	농어촌특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86,6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91조의11, 제96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5, 제104조의8제1항·제3항, 제104조의21, 제118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한다)·제10호·제19호·제31호·제32호 및 제6항, 제120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제120조의2,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및 제126조의2에 따른 감면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과세표준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표준세율 : 100분의 20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편 총칙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수익증권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5. 「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㉑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㉒ 이 법에서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의 정관 및 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

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제2편 금융투자업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제5편 집합투자기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제1장 총칙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 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89조(수익증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81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 제89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 제3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230조 제3항, 제238조 제7항, 제2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241조, 제247조 및 제248조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운용 특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76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같은 조 제1항 제1호 마목·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 제88조, 제89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 제3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82조, 제183조 제1항, 제184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 제2항 및 제3항, 제195조, 제197조, 제198조 제2항 및 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 제5항, 제211조 제1항, 제213조 제5항,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3항, 제222조 제1항, 제224조 제3항,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제241조, 제243조, 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 제1항·제2항·제6항은 집합투자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감독·검사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4.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5. 제182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편 보칙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편 벌칙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7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23. 제18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9. 제2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0. 제182조 제8항(제27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3. 제2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3항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제3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외국인

② 법 제9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9조 제5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4의 2.「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5. 협회

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7.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 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10.「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 법 제9조 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2. 제10조 제3항 제12호 ·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9조 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산출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 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운용보수, 판매수수료·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위하여 이미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와 다른 경우만 제출한다)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182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⑦ 금융위원회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③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71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및 외국 정부
2.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3. 제1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5.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6.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

④ 법 제249조의2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 제3항 및 제80조제6항 단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신탁업자 및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3.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4. 기준가격 산정오류 및 그 변경이 있는 경우(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주된 투자운용전략이 변경된 경우

⑤ 법 제249조의2 제6항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항 제1호의 경우: 제2항, 제3항 및 제80조 제6항 단서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사유와 처리방안

2. 제4항 제4호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오류의 발생원인 및 그 변경내용

3. 제4항 제5호의 경우: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사유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 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87조 제3항 관련)

59.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여부 결정, 신청인에 대한 문서 통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 기재 및 등록내용의 공고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록(법 제27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제19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82조 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8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82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2009. 2. 4. 폐지된 것)

제29조(신탁약관의 제정 및 보고)

① 자산운용회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별로 신탁약관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신탁약관에 따라 신탁약관을 제정하는 때에는 당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7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판매 및 광고의 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기 이전에는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신탁금 등의 납입)

자산운용회사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당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탁회사에 당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175조(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간접투자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하인 간접투자기구(이하 "사모간접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5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56조, 제59조, 제70조제4항 및 제5항(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동조제2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6조제2항, 제100조 내지 제102조, 제120조 내지 제124조, 제1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자산운용회사는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모간접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탁약관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의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 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2. 목적세

나. 지방교육세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끝.